

# 선거관리위원회 규정

## 1.(목적)

이 규정은 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 회칙 제13조에 의거 본 회의 임원 선출에 관련한 사항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(이하 위원회라 한다)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하기 위함이다.

## 2.(구성)

- 1) 대표이사는 임기 만료 3개월 이전에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 및 위원장을 위촉한다.
- 2) 위원회는 위원장 1인, 위원 2인 이상으로 구성한다.
- 3) 지부 내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, 위원 2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중앙위원회 위원 1인을 당연직으로 하고 위원은 지부 회원으로 구성한다.

## 3.(선거관리위원의 자격)

- 1) 본회(중앙 및 지부) 회원 자격 유지 3년 이상인 자
- 2) 본 회에서의 어떠한 징계에 처하지 아니한 자
- 3) 선거관리위원회 규정 제6조의 의무사항에 대한 서약을 필한 자

## 4.(선거관리위원의 임기)

- 1)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연도의 선거관리만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운영된다.
- 2) 지부의 선거관리 사유 발생 시에 한시적으로 운영된다.

## 5.(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)

- 1) 선거관리위원회는 본회 대표이사, 운영이사, 감사, 지부장 선출에 관한 제반 선거관리 업무를 관장한다.
- 2) 전 항의 선거관리에 관한 정관 또는 기타 규정의 해석이나 규정이 없는 경우의 처리 문제에 대하여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최종 결정권을 갖는다.

## 6.(선거관리위원회의 독립성)

- 1) 선거관리위원회는 정관과 규정에 따라 정관상의 다른 기구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선거관리 업무를 수행한다.
- 2) 대표이사, 운영이사, 감사, 지부장 등록 심사에서 독립기구로서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다.
- 3)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 진행 상황을 대표이사에게 서면 보고해야 한다. 단, 현 대표이사의 재출마 경우는 예외로 하고 현 대표이사는 선관위의 독립성이 유지되도록 최대한

협력해야 한다.

### 7.(선거관리위원의 의무)

- 1) 선거관리위원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전체 회의에 필히 참석하여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여야 한다.
- 2) 선거관리위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필히 공정하여야 한다.
- 3) 선거관리위원은 선거 기간 중 후보 측으로부터 향응이나 금전거래를 받아서는 안 된다.
- 4) 선거관리위원은 재임 중 정관상의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으며 대표이사, 운영이사, 감사, 지부장 후보로 등록할 수 없다.

### 8.(유권자 확정)

선거 공고일로 기산하여 정회원으로 재적하여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며 선거 일 이전까지 자격이 유지되는 정회원 수로 계산된 대의원 수(지부는 정회원 수)를 유권자로 한다.

### 9.(선거일 및 후보 등록 마감일)

- 1) 임원 선거일은 당해 연도 정기, 임시 총회일로 정한다.
- 2) 임원의 후보 등록 마감일은 그 선거일로부터 최소 3주 전으로 정한다.

### 10.(입후보자의 자격 및 공고)

- 1) 대표이사 입후보자의 자격
  - ① 본회 정회원 자격 7년 이상
  - ② 지역아동센터 관련 10년 이상
  - ③ 타 전국단체 미가입자
  - ④ 본 회에서의 어떠한 징계에 처하지 아니한 자
- 2) 운영 이사 및 감사 입후보자의 자격
  - ① 본회 정회원 자격 5년 이상
  - ② 지역아동센터 대표 및 시설장 경력 5년 이상
  - ③ 타 전국단체 미가입자
  - ④ 본 회에서의 어떠한 징계에 처하지 아니한 자
- 3) 지부장 입후보자의 자격
  - ① 본회 정회원 자격 3년 이상
  - ② 지역아동센터 대표나 시설장 경력 3년 이상
  - ③ 타 전국단체 또는 유사 단체 미가입자
  - ④ 본 회에서의 어떠한 징계에 처하지 아니한 자
  - ⑤ 정회원의 납부 의무를 다한 자
  - ⑥ 지부 총회일 기준 5년 이내 관련 사업 수행 중, 의도적인 사유로 행정처분 이상을 받은 자는 지부 임원으로 피선거권을 갖지 아니한다.
- 4)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의 자격 및 추천자의 추천 적격성 등을 심사하여 입후보자의

약력과 후보자의 소견서(공약서)를 본회 유권회원에게 ‘가,나,다’순으로 공고한다.

#### 10.(투표관리)

- 1)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 명부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각종 증명서를 대조하여 투표 자격을 확인한 후 소정의 투표용지를 배부한다.
- 2) 향후 전자투표 시스템을 도입할 경우에는 그 규정을 이사회의 결의 후 실시한다.

#### 11.(개표)

개표함은 투표종료 후 즉시 동일 장소에 모아 선거관리위원회의 책임하에 개표한다.

#### 12.(당선 확정 및 공고)

##### 1) 대표이사 당선 확정

-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최다 득표자를 당선자로 정한다. 만일 동수일 경우에는 연장자를 선정한다.
-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무투표 당선으로 결정한다.

##### 2) 운영이사 및 감사 당선 확정

-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출해야 할 운영 이사와 감사가 각 1명 일 경우 최다 득표자를 당선자로 정한다. 만일 동수일 경우에는 연장자를 선정한다.
-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자가 선출 운영이사 및 감사의 수와 같다면 무투표 당선으로 결정한다.

##### 3) 지부장 당선 확정

-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출해야 할 지부장과 감사가 다수일 경우, 최다 득표자를 당선자로 정한다. 만일 동수일 경우에는 연장자로 정한다.
-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무투표 당선으로 결정한다.
- ③ 각 지부는 지부장과 감사 선출 시에는 지역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.

13.(시행세칙)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기타 세부 사항은 위원회의 협의에 따라 정한다.

14.(기타)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중요한 사항은 본회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.

#### 15. (부칙)

- 1) 이 규정은 2021년 4월부터 유효하다.

규정 제정 2021년 3월 25일  
개정 2022년 6월 9일  
개정 2023년 11월 28일